



경기도의회 제393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의안번호 제76번

2026. 9. 7.(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요구이유

- 가. 최근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1년 도 1인가구 실태조사」 이후 1인가구의 변화된 특성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제2차 1인가구 지원 5개년('28~'3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7년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필요함.
- 나.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하여 1인가구 연구 전문인력이 확보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도의회 동의)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 나. 사업 추진 연혁 : 경기복지재단 위탁(2021년)
- 다.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1조(권한의 위탁)
 - 필요성
 - 경기도 및 권역별 시군의 1인가구 지역별·생애주기별 특성 및 정책욕구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하여 경기도 1인가구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된 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
 - 분야별(안전·주거·사회관계망 등)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경기도 1인가구 정책의 방향성 및 세부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1인가구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주요 사무

- 경기도 및 권역별 1인가구 지역별·생애주기별 특성 및 정책욕구 변화 추이 조사
- 1인가구 안전, 주거, 사회관계망, 삶의 질 등 분야별 주요 특성 심층 조사·분석
- 경기도 1인가구 정책에 대한 1인가구 체감도 변화 조사
- 경기도 1인가구 정책의 방향성 및 세부정책 제안

○ 소요예산(안) : 180,000천원(도비 100%)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인건비(연구원, 연구지원) = 33,300천원
- 연구조사비 : 133,000천원
- 회의운영비(보고회, 자문회의, 회의진행경비 등) = 6,400천원
- 일반운영비(보고서 발간비, 소모품비, 위탁수수료 등) = 7,300천원

마. 위탁시설 개요

○ 기관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 설립형태 : 지방출자출연기관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조

○ 기관규모 : 75명

바. 위탁예정 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기관 위탁(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 공기관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제4차, 기획담당관-8740(2026.8.3.))

3.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취지

- 본 동의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변화된 특성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제2차 1인가구 지원 5개년('28~'3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27년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제출됨.
-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6조¹⁾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지난 2021년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3~'27)'을 수립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경기도 1인가구의 안전, 주거, 사회관계망, 삶의 질 등 분야별 주요 특성을 심층 조사·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21년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구분	주요 추진경과
2021년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최초 시행, 경기도 1인가구 규모와 실태 분석, 지원체계 마련 및 1인가구 지원방안 도출 · 경기도 1인가구 현황·특성 및 생활실태 조사 ·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 방향 수립 · 전문가 집단을 통한 경기도 1인가구의 정책 수요 진단 ·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관련 정책 제언

- 본 동의안은 경기도 1인가구의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하여 1인가구 연구 전문인력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이를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 제1항²⁾에 의거 사무위탁

1)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

및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예정기간은 1년(2027. 1. 1. ~ 2027. 12. 31.)이고, 수탁기관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며, 소요예산은 1억 8천만원임.

- 본 동의안은 '2026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에 앞서 내부적인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

■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8조는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1조 제1호에서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위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경기도 및 권역별 1인가구 지역별·생애주기별 특성 및 정책욕구 변화 추이 조사, 1인가구 안전, 주거, 사회관계망, 삶의 질 등 분야별 주요 특성 심층 조사·분석, 경기도 1인가구 정책에 대한 1인가구 체감도 변화 조사, 경기도 1인가구 정책의 방향성 및 세부정책 제안 등이 통계조사, 설문조사, FGI(집단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시될 예정임.
- 이에,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설문조사 문항 설계 및 방법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며 연구 전문인력이 확보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고, 해당 실태조사는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 경기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본자료로의 활용 등 역할을 해야함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 및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5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위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사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³⁾과 부합하며, 재단의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을 때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026)」, 「경기도 1인가구 안전사업 현황 및 과제(2023)」,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연구(2022)」 등 1인가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본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설립일자) 2004.12.30. ※'20.12.1 명칭변경(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기구/정원) 3실 / 정원75명(일반직 58, 공무원17) ※ 정원 외 인력 82명 별도 ('26.8월기준)
- (임원) 13명(이사장 1, 대표이사 직무대행 1, 이사 9, 감사 2)
- (주요기능) 여성·가족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

- 다만 집행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위탁관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하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시 그 결과를 기재하여 함.

3)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런데, 지난 7월 제출된 심의의뢰서에는 위탁기간이 10개월(2027. 2. 1. ~ 2027. 11. 30.)⁴⁾이었으나, 이번 8월에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는 그 기간이 1년(2027. 1. 1. ~ 2027. 12. 31.)으로 차이가 있음.
- 이에 대해 집행부는 관리위원회 심사 이후, 실태조사가 연초에 계약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실태조사 이후 기본계획을 2027년 내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보다 미리 종료하게 될수도 있어서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다시 정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관리위원회 심사가 7월이었다는 점에서 동의안 제출 시기와 약 1개월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내용을 관리위원회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고 이후에 의회에 동의안 제출 시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심사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6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기관위탁·대행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도의회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대행의 필요성 포함)
3. 위탁·대행사무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4)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기획담당관-8740(2026.8.3.))

연번	대상	구분	실과명	사업명	예산 (백만원)	수탁기관	위탁기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의견	도의회 동의결과	노동자 가이드
41	공공	신규	가족 정책과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180	경기도여성 가족재단	'27-02-01 '27-11-30	적정	대상	제외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